

<영동군 공고 제 2023 - 호>

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(폐차)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

영동군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(직권폐차)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,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·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(대체압류 등)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 고 기 간 : 2023. 8. 8. ~ 2023. 9. 7.(30일간)
2. 강제처리(폐차)일시 :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
3. 강제처리(폐차)장소 : 가가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
4.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.
5. 공고 및 강제처리(직권폐차)대상 : 붙임참조
6. 유의사항

가. 이륜차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이륜차를 자진처리(이전)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(직권폐차)하고,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(100~150만원)이 부과되며,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건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에 송치되어 형사처벌(1년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)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강제처리(폐차)시 차량내 모든 물품(비품)도 함께 처분됩니다.

나. 이해관계인(저당 및 압류권자)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(대체압류등)를 하시기 바라며,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고 강제처리(직권폐차)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기타문의 영동군청 건설교통과(☎043-740-3514)

2023년 8월 8일

영 동 군

